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112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하여 원고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보이스 피싱 범인은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원고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후, 그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에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 하였거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목걸이를 판매하고 대금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갑 제3, 5, 7, 9호증, 을나 제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9. 3.경 원고 명의 KB종합통장계좌에 합계 39,000,000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 16시 4분경 위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1. 9. 6.경 원고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하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리자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원고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해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31.경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피고의 30돈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합계 17,000,000원에 판매하는 글을 공지하였고, 2021. 9. 2.경 C를 자처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C’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금목걸이 2개에 대하여 대금 1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21. 9. 3. 상호 이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21. 9. 3.경 C가 이 사건 송금(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C’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송금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을 먼저 하자 C에게 ‘다음에 개인 거래하시면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먼저 입금하시면 안되요 사기당하실 수도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C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받아 확인하고 C의 동생인 D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위 금목걸이 2개를 건네준 사실도 인정된다.

3. 판단

먼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금목걸이 매매대금으로 17,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교사, 방조 하였다거나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주의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어떠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